

[별표2](제5조 제2항 관련)

국가유산 전문가·법률전문가·이해관계자·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방법

구 분	의견 청취 방법
전문가 (국가유산 /법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서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며, [붙임1] 에 따른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.</li> <li>○ 필요시 관계 전문가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의 시 발언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으로 간주한다.</li> </ul>
이해 관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는 서면방식으로 하며, 소유권 판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</li> </ul>
관계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서면(공문)으로 한다.</li> </ul>

<붙임1>

(국가유산/법률) 전문가 의견서

성명	(인)	소속 직위		생년월일	
----	-----	----------	--	------	--

주소

의견서 요지

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첨부 : 세부 의견서 1부.

국가유산청장 귀하

※ 검토 사항

1. 국가유산 분야 : 유물과 유적의 역사적 성격(유물의 제작·사용 시기), 출토지역과의 관련성, 유적의 전승관계, 유물 출토 층위 및 외부 유입 여부 등
2. 법률 분야 : 해당 분야 판례(판결례), 유물(유적)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적 검토 등

※ 준수 사항

1. 전문가는 관련기록을 충분히 검토 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의견을 개진하여야 함
2. 전문가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의견을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함